# 李朝初期의 老人福祉에 관한 研究

-(太 祖~端宗)-

韓 昌 榮

# I 序 論

## 1.1. 老人問題의 現况

老人問題는 社會問題이다. 그러면서도 各界의 關心不足은 남부고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와 社會는 老人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져야 한다."

그 理由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老人問題가 차차 深刻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에 일어난 노인에 관한 慘事를 살펴볼 때 이들은 전에 그 類例를 찾아 보기 힘든 일들이라 하겠다. 不動產去來關係로 인하여 稅務調查에 시달렀던 老人이 自殺했으며", 7旬 盲人할아버지가 被殺되기도 했다." 한편 아파트 生活에 싫은 생각을 일으킨 할머니가 추석날 8層아파트에서 投身自殺한 事件이 있었다." 이 사건은 老人問題의 深刻性을 端的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사회적 반응은 컸던 것이다." 老人의 現住所는 한마디로 그늘진 곳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老後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文化財인 老人들도 生計가 어려운 실정인 것

<sup>1)</sup> 한국일보, 1978. 8. 5. 社說.

<sup>2)</sup> 조선일보, 1978. 9. 24. 社說.

<sup>3)</sup> 조선일보, 1978. 3. 9. (7).

<sup>4)</sup> 제주신문, 1978. 3. 14. (3).

<sup>5)</sup> 조선일보, 1978. 9. 19. (7).

<sup>6)</sup> 조선일보, 1978. 9. 21. (5).

<sup>7)</sup> 여성中央, 1978. 11월호, pp. 125-135, 特別企劃:老人들, 그 그늘진 現住所.

<sup>8)</sup> 尹泰林, "老後를 슬프게 하는 것", 主婦生活, 1978. 12월호, pp.108-111.

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그래서실지 文學平論家 李泰東 교수는 1978년 6월달의 小說에서는 죽음이 가까운 老人의 종말과 소외감을 다루고 있다고 논평했다. 10

이와 같은 老人의 그늘진 곳으로 부터 老人 스스로가 集團的 또는 個人的으로 換骨奪胎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集團的으로는 老人 새마을 運動에 참여하는 일이라면 지<sup>11)</sup> 自然保護運動에 참여하고 있다. <sup>12)</sup> 이외에도 집단적 활동은 많다. <sup>13)</sup> 그러나 老人 스스로의 힘으로 老人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老人問題가 쉬운 일이라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老人 스스로는 노인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에 바로 문제가 提起되는 것이다.

이른바 大家族制度가 무너져 가면서 核家族制度의 擴散現象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 1978년 4월 10일 農協中央會가 全國 40개 마을 1천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민의 의식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상농가의 46.4%가 核家族制度를 바라고 있어 농촌의 전통적인 大家族制度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와 같이 家族構造, 나아가서는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라 高齢者들은 家事決定權者로서의 地位가 底下되고 있으며 農耕社會에서 現代社會로 移轉되면서 經濟權을 喪失했으며 價值觀 및 倫理觀의 젊은 世代와의不一致, 生活樣式의 現代化等에 不安感을 갖는 것이 老人들의 現實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老人들은 經濟的인 문제, 健康問題, 疎外問題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에 관한 最近의 조사로서는 林春植의 조사<sup>16)</sup>, 尹翊重의 조사<sup>17)</sup> 그리고 筆者의 '濟州道老人論改等이 있다.

<sup>9)</sup> 조선일보, 1978. 2. 1. (5).

<sup>10)</sup> 조선일보, 1978. 6, 27. (5).

<sup>11)</sup> 申相俊 外 4人,"韓國의 老人福祉 向上을 위한 새마을運動의 深化方案", 새마을運動 研究論文集 刊行委員會, 새마을運動 研究論文集, 第1輯(上), 1978, p. 516, ; 太完善, "老人 새마을運動", 大韓老人會·韓國老人問題研究所, 老人生活, 1978 夏季號, pp. 32-34, ; 拙著, 濟州道老人論及(利주:韓一文化社, 1978), pp. 141-145.

<sup>12)</sup> 조선일보, 1978. 10. 15. (7).

<sup>13)</sup> 老人들의 집단활동은 각 노인학교, 敬老教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데 여기에는 신문에 나타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up>○</sup> 조선일보, 1978. 2. 21. (4); 중원군 49개 老人會에서 옛 農村文化를 再現하는 展示會.

<sup>○</sup> 조선일보, 1978. 7. 4. (4); 세번째 回甲 맞는 扶安『老休齊』.

<sup>○</sup> 한국일보, 1978. 8. 30. (8); 60代의 할머니 排球팀-서울 장년 새마울클럽.

<sup>○</sup> 조선일보, 1978. 9. 14. (7); 登校진 지키는 老人들.

<sup>○</sup> 조선일보, 1978. 10.18. (5); 老人학교솜씨 -鄉土음식 作品展等.

<sup>14)</sup> 崔在錫, "家族", 조선일보, 1978. 9. 12. (4).

<sup>15)</sup> 조선일보, 1978. 4. 11(2), ; 농민신문, 1978, 8. 21, (5): 한국일보, 1978. 8. 23. (5).

<sup>16)</sup> 林春福, "老人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 여성中央, 1978年 11月號 pp.129-131.

<sup>17)</sup> 제주신문, 1978, 10. 25. (4).

現在 우리 老人生活의 具体的인 面을 살펴보면,

- ① 배우자의 死別 또는 親知의 상실로 대인관계가 고독하게 되고
- ② 獨立自活的 能力이 상실되어 他人에게 의존생활을 하게 되고
- ③ 男子는 직장취업에서 은퇴하게 되고 女子는 가정경제권을 포기하게 되며
- ④ 社會 및 家庭에 있어서 上位에서 下位로 地位가 庇下되고
- ⑤ 경제적 이해관계의 감소로 인하여 生活範圍가 위축을 가져 오게 되고
- ⑥ 生理的 老化現象의 증가로 인하여 身体的 不自由 또는 만성질병이 加重되며,
- ⑦ 日常生活에 對한 希望과 계획에 대해서 흥미를 상실한다. 18)

老人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프랑스의 老人들도 家族紐帶 없이 外部의 努力만으로는 孤獨을 못 달래어 疎外問題가 심각하다고 한다. 19) 일본에서는 그 나라 敬老日(9月15日)에 곳곳에서 老人들의 自殺事件이 발생하여 일본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露星시키고 있는 것이다. 20) 더구나 일본은 平均壽命이 72歲에 達하여 人口의 高齢化의 衝擊을 받고 있다. 21)

급속한 社會發展의 결과로 平均壽命이 늘고 60세 이상의 高齡人口가 급격히 增加함으로써 80년대 후반부터 美國, 일본등 先進諸國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심각한 老人問題가 우리 나라에서도 제기 될 전망이다.

KDI(韓國開發研究院)가 축정한 77년부터 91년사이의 15년간에 결친 60세 이상 老人人口增加率은 年平均 3.72%에 이르러 같은 기간의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1.55%를 2.17포인트나앞지를 것이 豫想되고 지난 62년부터 76년사이의 15개년 연평균증가율 2.96%보다 0.76%포인트나 높을 展望이다.

이에 따라 77년부터 91년까지는 62년부터 76년까지 증가한 60세 이상 인구 72만명보다 약 2배가 많은 1백50만1천명이 증가하여 60세 이상이 모두 3백50만8천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는 현재의 노인인구 2백만7천명(76년말 현재)에 비해 74.8%, 17년전인 61년의 1백28만7천명에 비해 2.7배가 각각 늘어난다는 것이다.

平均壽命은 76년의 67.4세에서 81년에는 69.3세, 86년에는 70.9세, 91년에는 72세로 각각

<sup>18)</sup> 河相洛, "韓國老人의 社會福祉政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韓國에 있어서의 老人問題(1977)p.40.

<sup>19)</sup> 경향신문, 1978. 1. 28. (3).

<sup>20)</sup> 조선일보, 1978, 9, 17. (7).

<sup>21)</sup> 경향신문, 1978, 7, 10. (3).; 田中博秀, 高齢化社會の 衝撃(日本・東京:ダイヤモンド社, 1977) 참조,

늘어난다.<sup>22)</sup> 그리다여 2천년대에는 平均壽命이 85세로 연장된다고 豫書하고 있는 學者도 있다.<sup>23)</sup> 그래서인지 80세 이상 되는 長壽者의 생활습관을 研究한 結果가 나타나기도 했다.<sup>24)</sup> 이 와같은 高齡化現象은 老人問題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요즘 忠孝思想의 昴揚에 따라 敬老思想도 高揚되고 있다. 이른바 孝道觀光의 봄으로 老人觀光客이 늘고 있다. <sup>25)</sup> 그리고 老人福祉의 制度化 내지 法制化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老人福祉 問題法制化推進協議會가 1978년 8월 31일에 創立되었다. <sup>26)</sup> 한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는 10월 17일에 「老人福祉法」制定을 國會에 請願했다. <sup>27)</sup> 이 모두 老人의 福祉를 위하는 일들이라 하겠으며 최근에 老人問題에 관한 研究傾向도 드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2. 研究目的

우리 나라에서도 70年代初부터 老人問題에 대한 研究는 활발히 전개 되어지고 있다. 老人問題에 관한 論文들도 前例없이 많이 發表되고 있으며 著書와 잡시도 刊行되었다.<sup>28)</sup> 그리고 老人問題를 本格的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創立되었다.<sup>29)</sup>

第11回 國際老年學會議(The X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가 日本 東京에서 개최 (1978年 8月 20-25日) 되었는데 이 會議에 老年學者 數人이 參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sup>22)</sup> 경향신문, 1978, 7. 10. (3).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77), p.185.

<sup>23)</sup> 週刊朝鮮, 1978. 1. 29. p. 22.

<sup>24)</sup> 윤신길, 젊어지고 오래사는 길(대구:文化出版社, 1978)참조.

<sup>25)</sup> 한국일보, 1978. 10. 20. (5).

<sup>26)</sup> 조선일보, 1978. 9. 1. (7), :한국일보, 1978. 9. 1. (5), :경향신문, 1978. 9. 4. (2), 社戰. : 週刊한국, 1978. 9. 17. p. 9.

<sup>27)</sup> 조선일보, 1978. 10. 18. (7).

<sup>28)</sup> 老人問題에 관한 單行本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刊行되었다. 즉 1976年에는 金相圭,老人福祉의体系的 研先,貝原益軒著 宋肅庚譯,不老의 秘訣, 1977年에는 朴在侃,老人數科書의 朴在侃,老後,吉田秀夫·三浦文夫著 金尚年譯,老後의 生活과 保障,1978年에는 윤신길,젊어지고 오래사는 길,拙著,濟州道老人論攷等이 있다. 그리고 1977年에 刊行된 韓國社會福祉協議會, 韓國社會福祉總覽의 一部에 노인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또한 1975年부터 大韓老人會・韓國老人問題研究所,老人生活이 季刊으로 刊行되고 있으며 노인문제에 관한 brochure는 韓國社會專業大學,노인복지연구소,노인복지연구(1977년 창간)등이 있다. 그리고 韓國社會福祉協業會, 社會福祉 '77 가을호에 特輯:老人問題의 社會福祉를 비롯해서 여러잡지에 노인문제에 관한 特輯이 複出하고 있다.

<sup>29) 1977</sup>년에는 韓國社會事業大學에 노인복지연구소가 創立되었으며 1978년에는 한국 노인문제연구 소가 發展的으로 削設되었다. 그리고 韓國老年學會가 12月 16日에 創立되었다.

老年學界에 하나의 轉換点을 마련했다. 30) 이 會議에서 發表된 老人問題에 관한 論題를 分析해 보면 各分野에 결쳐 이른바 橫斷的 또는 水平的 接近(horizontal approach)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老人問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적 접근이 많으며 그 것도 역시 橫斷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老人問題에 관한 橫斷的 接近方法이 아니라 縱斷的 接近方法(vertical approach)에 관한 것은 老年學自体의 發達에 관해서 시도되고 있다. 32) 老年學의 內容에 관한 것으로서는 Leonard D. Cain의 "Aging and the Law"라는 글에서 法制史的인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縱斷的 近接 또는 歷史的 接近이라 할 수 있다. 33)

우리 나라에서도 老人問題를 縱斷的, 歷史的 接近을 해보자는 시도가 部分的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사실 老人에 관하여 歷史的으로 考察할 때, 敬老思想이 基幹을 이루어 老人이 대접을 받았다.

教老思想은 孝道思想의 연장이다. 『내 노인을 노인으로 받들어서, 남의 노인에 까지 미치게 한다』(老吾老하야 以及人之老)고 했다. 儒道倫理에서는 인간의 교제에 있어서, 연령을지위, 德行, 학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이가 곱절이 많으면 부모와같이 섬기고, 열살이 많으면 형과 같이 섬기고, 다섯살이 많으면 어깨 뒤를 따른다.』(年長이倍則父事之하고, 十年이 長則兄事之하고 五年이 長則肩隨之나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敬老思想은 길려져 왔던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해서는 학식이 優越하고 先人의 역사를 이어받았고, 인간생활에 풍부한 경험을 가졌고, 인생으로서 成就者라는 신망을 일반이 가지게 되 자다. 이처럼 敬老思想이 철저하던 옛날에는 가정이나 사회의 질서가 잘 잡히고 道義가 실천되어 노인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福祉가 충만하여 이른바 老人極樂時代를 이루

<sup>30)</sup> The X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List of Participants, pp. 19-20.

<sup>31)</sup> The Xlth International Congress of Gerontology, Abstracts For Plenary Sessions & Symposia, 참조.

<sup>32)</sup> 金相圭,老人福祉斗 体系的 研究(大邱: 慶北大學校出版部,1976), pp.12-13,:橘発膀,老年學, その問題と考察(東京: 誠信書房,1971), pp.1-67.

<sup>33)</sup> Robert H. Binstock & Ethel Shanas edit.,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1976), pp. 342-363.

<sup>34)</sup> 이 분야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차在侃, 老人教科書 pp. 19-21에 李朝의 老人禮遇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韓國科學研究所, 韓 國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 pp. 37-38세서 우리나라의 옛 老人保護 問題를 다루고 있다. 또 한 崔洛院, "李朝時代의 社會事業制度에 對한 考察", 中央大學校社會事業學會, 社會福祉研究, 第 九韓(1975)에서 老人에 관한 고찰을 약간 하고 있다.

고 있었다. 35)

이에 着眼하여, 過去의 老人에 관한 우리 固有의 老人禮遇는 훌륭했건만 그에 대한 歷史的 인 本格的 接近이 거의 없는 点을 硏究하고자 하는데 本 硏究의 첫째 理由가 있으며 둘째로는 老人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西歐에서 발달한 對策만으로는 안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 보자는 것이다.

즉 우리의 思想과 우리 固有의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創案하고 개발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老人福祉를 펴 나찬 때 우리 老人은 보람있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社會가 해야 할 하나의 良心의 課題이기도 하다.<sup>36)</sup>

따라서 本 研究는 우리 老人福祉問題를 진정 根源的으로 실마리를 **물기 위해서 歷史的으로** 그 문제를 고찰해 보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老人問題를 理解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最適한 老人福祉模型을 創出해 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3. 研究方法 및 範圍

#### 1.3.1. 研究方法

本 研究는 이미 研究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의 老人問題를 보다 잘 理解하고 바람직스 런 우리의 老人福祉를 創出해 내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오늘의 일을 發生剂 한 過去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즉 縱斷的,歷史的 接近方法을 擇했다. 이 方法을 취했기 때문에 分析素材는 자연 史料의 文献에 의한 調査方法을 사용했다. 이 方法에 의해서 分析的 方法으로 옛 史料에서 老人福祉에 관련된 資料를 抽出하고 分析했다.

分析內容은 오늘날의 老人福祉概念에 內包된 類型을 土台로 해서 옛날 史料를 分析,整理하는 分類方法을 사용했다. 그렇다고 해서 現代의 老人福祉概念의 內包에 포함되지 아니한,傳來의 固有한 老人福祉對策이 있으면 이를 度外視하지 아니하고 같이 다루었다. 왜냐하면 이 먹한 것을 다루는 것은 過去의 老人禮遇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老人問題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現代의 老人福祉概念을 設定하는 데는 國內外의 諸學者들의 見解를 比較分析하는 方法으로 그 概念을 定立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른바 橫斷的 接近方法을 取하지 않을 수 없다.

<sup>35)</sup> 朴在侃,老人教科書(서울:韓國老人問題研究所,1977), p.19.

<sup>36)</sup> 金聖順, '우리에게 알맞는 老人福祉를', 大韓老人會·韓國老人問題研究所, 老人生活, 1978 夏季號, p. 63.

### 1.3.2 研究範圍

本 研究의 範圍는 주로 李朝時代의 初期에 해당하는 太祖로 부터 端宗까지의 年代에 결친 老人福祉에 관한 歷史的 發展過程을 살펴 보는데 있는 것이다.

무롯 歷史的 發展樣相은 編年的 斷面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歷史的 後件이 있기에는 반드시 前件이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주로 李朝初期의 老人問題를 다룬다고 하지만 高麗時代의 노인관계 나아가서 소급하여 三國時代의 노인관계도 概觀的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 李朝初期의 노인관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三國時代의 富麗時代의 노인관계를 살펴 본 다음 李朝初期의 노인관계를 具体的으로 천착하는 것이 時代的인 範圍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李朝初期에 있어서 太祖로 부터 端宗에 이르기까지의 노인관계기록은 여러가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거니와 그 內容을 모두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本論文의 目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주로 老人福祉 또는 老人禮遇等에 관한 것을 研究의 範圍로 삼았다.

歷史上에 나타나는 老人福祉 또는 老人禮遇에 관한 일도 그 社會的 背景과 密接不可分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연 社會的 背景을 各 時代別로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各 時代別의 社會的 背景을 간략하게 살펴 보는 일도 本 硏究의 範圍에 포함된다.

李朝時代의 初期에 나타난 老人輻祉에 관한 史料를 分析하는 톨(frame)이 必要하게 되는데이를 위해서 老人福祉에 관한 概念規定을 하는 것도 本 研究의 範圍內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章에 老人 福祉의 概念規定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 차례로 三國時代와 高麗時代, 그리고 李朝初期의 老人福祉에 관한 일을 고찰하는 것이 順序인 것이다.

### 1.4. 本 研究의 限界

韓國史를 時代的으로 遡及돼서 올라 갈수록 史料의 稀少性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거니와 老人에 관한 史科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韓國史에 관한 文献에서 老人福祉問題를 다른 事件처럼 en bloc과여 다룬 것은 더구나 드물다. 여기에 本 研究의 限界가 가로 놓여 있다.

本 硏究의 주된 史料로서는 朝鮮王朝實政을 택했다. 왜냐하면 이 實政에서 老人에 관한 史料가 散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實政은 王權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된 것이다. 그러므로 老人福祉對策에 관한 것도 자연 王權中心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다

만對策니는福祉은것뿐라所에 現結의 에城中 福代祉한 地央에人 의아이歸나老의는다. 政한 것, 民間團体 또는 社會團体에 의한 것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次元에서의 老人福祉對策에 관해서는 史料의 制限性이 있으므로 本 研究의 限界点이 여기에도 있게 된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도 國譯本을 사용했으며, 보조자료로서도 될 수 있는 限 국역본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했으며 국역본이 없을 경우에는 漢文本의 史料를 사용했다.

# Ⅱ 老人福祉

## 2.1. 老人驅祉概念

老人福祉게 관한 槪念을,有力한 여러 學者들의 見解를 土台로 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J. Kaplan의 見解

Kaplan은 老人福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生活上의 悠求로서 社會가 다루고 處理해야 할 일로.

- ① 健康을 增進하고 生命을 延長하기 위한 醫學 및 精神醫學的 서어비스
- ② 適切하 住居 마련
- ③ 精神的인 安定性과 社會的 有用性을 위한 機會
- ④ 退職 後의 經濟的 安定
- ⑤ 慢性病老人을 위한 保護措置
- ⑥ 勞動能力에 適合한 일을 갖는 機會
- ⑦ 創造的 活動의 機會 및 餘暇를 積極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指導의 7個項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醫療의 經濟的 安定의 要求는 모든 老人에게 不可欠의 것임을 指摘하고 그는 以上과 같은 諸要求를 위한 老人對策을 "social program for older people"(老人을 위한 社會的 對策)이라 하여 廣範한 老人對策을 主張하고 있다.

#### 2) B. E. Shenfield의 見解

이것도 前者와 비슷한 着想에 根據하는 것이지만 老人對策의 內容範圍가 前者보다 약간 중

<sup>37)</sup> 金相圭, 前掲書, pp.75-79, : 岡村重夫・三浦文夫. 講座 日本の老人, 2. 老人の福祉と社會保障 (東京:垣内出版株式會社, 1977), pp.58-59, : 拙著, 荷州道老人論攷(オ주:韓一文化社, 1978), pp.56-58.

은데 Shenfield는 이를 "social policy for old age"(老齡者를 위한 社會的 施策)이라 하고 있다. 그의 內容을 보면.

① employment=雇傭對策 ② pension = 年金制度 ③ housing=住宅對策 ④ medical care= **醫**療對策 ⑤ residential care and domiciliary welfare services=收容保護 및 居宅老人을 위한 서어비스이다.

이 5個項에 의해 老齡者를 위한 社會的 對策은 構成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 3) 岡村重夫의 見解

岡村은 老人對策에는,

- (1) 老人의 平均的 條件과 그 生活의 一部面만을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소위 "老人政策"이라고 하는 것,
- (2) 老人의 生活要求나 그 條件을 個別化하여 援助하는 소위 "社會福祉서어비스"라고 하는 것,

과 같은 두가지 要素가 包含되는 것이라 하고, 또 그는 이 두 部分이 關聯되는 方法에 對해서 ① 保護的 社會福祉 ② 豫防的 社會福祉 ③ 開發的 社會福祉 ④ 調整的 社會福祉라는 概念을 提出하여 그는 老人政策外에 그 政策을 補完하는 것으로 社會福祉서어비스를 附屬시킬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 老人福祉서어비스의 体系는 다음 表와 같다. 38)

老人의 基本的 欲求	經濟的安定	職業的 安定	醫療,衛生, 營養의 保障	家族的 安定(住宅,日常生活保障)	社會的協同 制 機會	教育의 機合	文化, 誤 樂의 機 會
一般的 老人政策	老騎年金	中高年齡 者当 戦 業安定 施	醫療保 <b>障</b> 公衆衛生	家族近代化施 策,家族法, 非營利的 住 宅政策	職域·地域 團体参加	社會 教育 施策	非營利的 레크레이 선 施策

老人驅祉서어바스의 体系

# 4) 金相圭 博士의 見解

金博士의 老人福祉에 대한 定義는 다음과 같다.

認識되어진 본人問題의 豫防, 輕減 또는 解決을 위한 貢献을 企圖하고 또 老人家族, 地域 社會의 福祉의 增進을 企圖하는 社會的 서어비스와 制度의 体系라는 것이라하고 이와 같은 定義에 立脚하여 그 施策의 內容으로는 ① 老人의 生活要求나 條件을 個別化하여 援助하는

<sup>38)</sup> 岡村重夫, 三浦文夫, 前揭書, p.85.

福祉 서어비즈, ② 老人의 平均的 條件과 生活의 한 部分만을 專門的으로 取扱하는 老人政策이 必要하게 된다.

그리하여 前者에는 가, 地域老人福祉서어비스, 나, 收用施設에 의한 서어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後者에는 가, 老後를 위한 生計對策, 나, 老人을 위한 醫療對策, 다, 住宅對策, 라, 老後를 위한 福祉教育等이 포함되어 있다.<sup>39)</sup>

## 5)河相洛 교수의 見解

老人福祉는 老人이 하나의 獨立된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欲求充足과 그 文化的 生活維持를하게금 함을 意味한다고 한다. 老人福祉와 社會福祉가 相異한 것이 있다면 그 수혜자가 老人이라는 것 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老人福祉란 老人生活의 經濟的인 側面, 肉体的인 側面, 精神的인 側面 및 社會的인 側面등의 다양한 側面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故로 老人福祉란 老人生活의 一部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生活全面의 要求의 충족을 할수 있게끔 계획되고 綜合化된 老人福祉로써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40) 따라서 河 교수는 老人福祉의 多樣한 側面에서의 綜合的 對策을 강조하고 있다.

## 6) 申相俊 博士 外 4人의 見解

老人福祉는 基本的으로 老人의 就業의 自由權 내 지 社會參與權이 保障되어야 하고 老人健康向上 내지 壽命延長을 위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하겠으며 心身障碍로 인한 補職不可能 老人에 대한 社會保障이 徹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그리하여 老人福祉向上을 위한 一般的 方案에 관한 体系를 目的的 側面, 立法的 側面, 行政的 側面, 教育文化的 側面으로 分類하여 정리하고 있다. (2)

#### 7) 筆者의 見解

무롯 社會福祉 단 個人이나 集團이 幸福한 生活을 하도록, 人間生活의 社會關係에서 나타난 社會福祉 問題에 對應하는 社會的 施策이나 制度의 組織的인 体系를 말한다. 43) 社會福祉의

<sup>39)</sup> 金相圭, 前揭書, p.145.

<sup>40)</sup> 河相洛,"韓國老人의 社會福祉政策",韓國社會科學研究所,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1977), pp. 36-37.

<sup>41)</sup> 申相俊 外 4人, "韓國의 老人福祉向上을 위한 새마을 運動의 深化方案." 새마을運動研究論文集— 第1輯(上), 1978-, p. 512.

<sup>42)</sup> 申相俊 外 4人, 上揭論文, pp. 513-514.

<sup>43)</sup> 金琮燮, 福祉行政論(서울:法文社, 1976), p. 51.

受惠者가 老人이라는 점을 前提하여 老人福祉의 概念을 把握한다면 「老人이나 老人集團이幸福한 生活을 하도록, 人間生活의 社會關係에서 나타난 社會福祉問題에 對應하는 社會的 施策이나 制度의 組織的인 体系」라 할 수 있다. <sup>41)</sup>

## 2.2. 本 研究의 体系

老人福祉에 관한 理論이 發達한 것은 最近의 일이다. 이미 위에서 살펴 본 老人福祉의 概念과 그 內容들이 오늘날에도 모두 現實化되고 있지 않다. 하물며 옛날로 遡及해서 올라갈 수록 老人福祉에 관한 內容은 單調롭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發達한 老人福祉에 관한 体系를 가지고서 옛날의 문제를 分析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符合하지 않다. 즉 細分化된 老人福祉의 理論体系를 가지고서 전착하기 힘들다 하겠다.

傳統的인 大家族制度下에서는 이른바 養老事業이 老人福祉概念의 發達史上 나타나고 있으며 이른바 老人禮遇에 관한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 本研究에 있어서 老人福祉에 관한 筆者의 概念規定을 土台로 하여 「施策」과「制度」란 兩大体系와 이 두가지 体系에 包攝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은 「其他」로 다루려한다.

여기서 施策이라 함은 一時的,暫定的,非組織的,非体系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制度는 長期的,恒久的,組織的,体系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三國時代・高麗時代

本 研究의 性格上 三國時代의 高麗時代의 老人福祉에 관한 施策이나 制度等은 簡約하게 다 루려 한다.

## 3.1. 三國時代

#### 3.1.1. 時代的 背景45)

三國時代는 우리 민족이 氏族社會, 群部小族國家로 부터 통일된 民族國家社會로 활발하게 成長하는 時期였다.

<sup>44)</sup> 拙著。 適州道老人論攷(제子: 韓一文化社, 1978), p. 58.

<sup>45)</sup> 韓國社會福祉協議會, 韓國社會福祉總覽(1977), p.1.

뒤를 이어 百濟, 新羅가 國家의 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서기 633년의 百濟征服과 서기 668년의 高句麗征服으로 신라가 민족을 統一할 때까지의 約 700年 間을 歷史上 三國時代라 하고, 그후 신라의 統一은 계속되었으나 서기 900年 경에 後百濟, 封建國이 연달아 일어나 이른바 後三國時代가 되었다가 서기 935년에 高麗의 新羅併合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三國時代로 부터 新羅統一時代와 後三國時代를 거쳐 高麗統一에 이르는 900년 동안에는 地域的 環境과 社會的 環境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각기 특색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儒教, 佛教, 道教를 받아들여 본래의 民族特殊文化에 융합시켜 우수한 국민문화를 이룩하고 국가의 정치체제를 강화해 갔다. 편의상 이 900년 동안을 통털어 三國時代로 보기로한다.

三國時代 以前에 各地에 分立하였던 민족의 集團社會는 이로서 民族의 大集團社會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된 것인데 이 時代의 社會構成은 대개 엄격한 階級制度(王族, 貴族, 官僚, 平民, 奴隷等)를 수립하고 토지는 원칙적으로 國有制의 명목 하에 각 계층세 分給하고 上層階級의 支配下에 下層階級은 걸대로 복종하여야 되는 主從的 關係를 맺었었다.

# 3.1.2. 三國時代의 老人職祉

#### (1) 髙句麗

高句麗에서의 養老에 관한 施策은 太祖大王 六六年(一一八)에 나타나고 있으며 故國川王 一六년(一九四), 故國原王 二년(三三二)와 實藏王 四년(六四五)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 46 이역시 敬老思想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본다. 太祖大王은 六六년(一一八)에 有司에게 命하여 賢良한 孝順을 천거하게 한 것으로 미루어 봐도 알 수 있다. 47

그러나 老人福祉에 관한 制度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 百 濟

百濟에 있어서도 老人福祉에 관한 施策으로는 주로 養老事業기 나타나고 있었다. 多婁王 ---년(三八) --〇월에 東西兩部를 순무하여 빈한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 그

<sup>46)</sup> 拙稿, "老人孜". 東國大學校大學院, 研究論集 第7輯 (1977), p. 97.

<sup>47)</sup> 拙稿, 上揭論文, p. 98,

석씩을 주었다. <sup>48)</sup> 比流王 九년(三一二), 義慈王 二〇년(六六〇)에도 養老事業을 전개했다. 따라서 敬老思想이 드높았었다.

老人福祉에 관한 制度로서 관직에는 70세의 致仕法(停年制度)이 있었으며 이 규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9)

#### (3)新羅

이 時代에 있어서 老人福祉에 관한 施策 역시 養老事業이 主軸을 이루고 있었는데 儒理尼師 今 五年(二八)에 王命에 의한 給養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始作한 것을 볼 수 있다. 50) 이러한 養老事業은 娑婆尼師今 —四년(九三)에 이어 與德王 八년(八三三)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聖德王 때에 이러한 사업을 세 차례나 벌였다. 51)

이러한 養老事業도 敬老思想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新羅에서는 神文王 二년(六八二)에 國 이 설치되고 元聖王 四년에는 讀書三品科가 설치되어 教育制度上으로 敬老思想을 振作시켰으며52) 이른바 花郎徒의 「世俗五戒」에 나타난 「孝」에 대한 觀念은 역시 敬老思想에 큰 영향을 주었다.53)

老人의 官職生活은 70세까지 保障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老退하면 왕은 几杖을 하사하였다.<sup>54)</sup>

따라서 三國時代에는 敬老思想에 바탕을 둔 養老事業이 主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0세에 老退하는 制度가 싹트기 시작한 時代가 三國時代라 하겠다. 즉 施策과 制度가 未分化된 時代이다.

#### 3.2. 高麗時代

#### 3.2.1. 時代的 背景

서기 935년의 高麗統一 以後 서기 1392년의 李朝建國까지의 약 500年間을 高麗時代라 한다. 이 時代의 特徵은 佛教의 崇信이라고 할 수 있다.

<sup>48)</sup> 拙稿, 上揭論文, p. 98.

<sup>49)</sup> 拙稿, 上揭論文, p. 98.

<sup>50)</sup> 金園道, "老人福祉施設斗 問題点斗 ユ 對策',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77 가을호, p.28.

<sup>51)</sup> 拙稿, 前揭論文, p. 95.

<sup>52)</sup> 李成茂, 韓國의 科學制度(서울: 한국일보社, 1976), p. 38.

<sup>53)</sup> 리선근, 화랑도와 삼국통길(서울: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p. 65.

<sup>54)</sup> 金富軾, 金鍾權譯, 三國史記(上)(서音:大洋書籍, 1975), p. 203.

on the property of

THE RESERVE

三國時代에 行해지던 民生教恤의 여러 制度는 高麗時代에 계승 발전되었으며 특히 太祖 이래로 歷代君王이 대개 佛教의 慈悲心에 立脚한 善政으로써 백성을 다스렀으므로 많은 발전을 보았다. 55)

### 3.2.2. 高麗時代의 老人福祉

이 時代에 접어들면서 養老事業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樣相도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55) ① 國老에 관한 養老, ② 60세이상에 관한 養老, ③ 80세이상에 관한 養老, ④ 老人에 賜宴하는 儀式의 發達, ⑤ 鰥寡孤獨賬貸制에 의한 老人優待等이 있다.

이와같은 養老事業 역시 高麗時代의 敬老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再言을 要치 아니한다. 不忠不孝의 子孫을 赴擧함을 許하지 못하게 하였으며<sup>57)</sup> 교육, 과거제도를 통해서 孝行을 권장하였다.<sup>58)</sup>

老人을 禮遇하는 制度로서는 高麗時代에 와서 多樣하게 나타난다.59)

- ① 顯宗 五年부터 老人職을 주었다.
- ② 軍人으로서 七十歲 以後에는 口分田을 받았다.
- ③ 高齢者에게는 老人奉仕者인 侍丁을 두게 하였다.
- ④ 庶民으로 나이 八十歲 以上된 者에게는 所司에서 姓名을 具錄하여 申聞하게 하는 제도가 成宗 十年 七月의 下教에서 시작되었다.
- ⑤ 六十이 되면 老役을 졒除시켰다.
- ⑥ 老人을 奉養하기 위해서는 軍役이 免除되었다.
- ⑦ 老父母를 奉養하기 위해서는 外官이나, 外軍에 補하는 것을 不許했다.
- (8) 老父母生存時의 官吏給暇는 二百日을 주었다.
- ⑨ 어버이를 위하여 殺人한 경우에 容赦받은 事例가 있었다.
- ⑩ 老退(致仕)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상 高麗時代의 老人 দ 체에 판 서 살펴 봤거니와 養老事業에 있어서는 三國時代에 新羅의 경우, 聖德王 때 제일 관심이 컸으며 高麗時代에는 仁宗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高麗時代로 접어들면서 養老事業이 多樣하게 발전했다. 60) 老人福祉를 위한 制度에

<sup>55)</sup> 韓國社會福祉協議會, 韓國社會福祉總覽 1977, p.2.

<sup>56)</sup> 拙稿, 前揭論文, pp. 100-104.

<sup>57)</sup> 東亞大學校古典研究所編, 譯註高麗史 第七, p.4,

<sup>58)</sup> 李成茂, 前揭書, pp. 35-51.

<sup>59)</sup> 拙稿, 前揭論女, pp. 106-109.

<sup>60)</sup> 拙稿, 前揭論文, pp. 109-110.

관해서는, 三國時代에 단순히 70歲停年制度가 움튼 것에 不過하였으나 高麗時代에는 여러가 지 形態의 制度로 發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가 分化하기 시작하는 現象이 나타났다.

## Ⅳ 李朝初期

本 論文은 李朝初期의 前半部에 해당하는 太祖로 부터 端宗까지(1392—1454)의 半世紀에 결 친 老人福祉에 관한 일을 고찰하는 데 있다. 즉 李朝建國(1392)후 6代 端宗게 이르는 時期로 서 李朝創業 善政時代를 장식하는 始期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李朝初期의 社會的 背景을 살피고 다음으로 王朝別로 老人福祉에 관한 施策과 制度를 고찰하고자 한다.

## 4.1. 社會的 背景

朝鮮王朝의 建國은 오랜 元朝의 壓力을 벗어난 自由스러운 雰圍氣와 新生獨立國家의 抱負로 燦然한 典章文物을 產出하여 文化는 그 初期에 벌써 最高潮를 具現한 黃金時代를 보이게 되었다.61)

朝鮮王朝를 一貫한 指導理念은 儒教코거니와, 魔末부터 李衣桂一派外 推進해온 抑佛崇儒의 政策은 朝鮮王朝의 國是로 되었다. 62) 그리하여 그 당시에 社會는 儒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人類를 個別的으로 教導하기 위해서 提示한 人間 相互間의 孝弟 忠恕 및 愛敬을 강조하는 유교가 社會生活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게 따라 敬甚思想과 養老事業等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지거니와 養老는 옛부터 孝道를 일으키기 위하여 三國時代以來 歷朝, 歷代의 군왕이 모두 深甚한 주의를 경주한 사업의 하나로서 李朝初期게 접어들면서도 儒教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다. 63) 近代 以前의 社會에서 身分關係는 그 時代의 모든 制度, 機構를 運營하는 데 基本的인 標準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니, 身分關係의 如何에 따라 日常生活에 있어서 規矩를 달리하였다. 朝鮮王朝의 身分階級은 「兩班」,「良人」,「賤人」의 三種으로 大別할수 있다. 64) 이와 같은 身分制는 朝鮮王朝의 支配体制의 중요한 기초의 하나가 되었는 데 이러한 身分制度 역시 初期에 形成되었다.

<sup>61)</sup> 李相佰, 韓國史 近世前期編 (서울: 乙酉文化社, 1962), p. 10.

<sup>62)</sup> 李相佰, 上揭書, p.12.

<sup>63)</sup> 韓國社會福祉協議會, 韓國社會福祉德覽 (1977), p. 8.

<sup>64)</sup> 李相佰, 前掲書, p. 303.

朝鮮王朝 社會의 基本單位는 個人이 아니라 家族이요 그것도 家父長的 이었다. 그리하여 思想,道德이나 政治,經濟나 모든 事象이 이 家族을 中心 또는 基底로 構成되고 運營되어 왔으며, 더우기 儒教를 政教의 最高原理로 崇奉하였던 까닭에 儒教가 國民精神의 理想이되고, 祖先崇拜가 民族信仰의 核心이 되었다고 할만하여, 冠婚喪祭의 禮教와 儀式이 중요한文化的,社會的制度가된 것이다. 太祖는 建國 初에 그 教書에서 이미 冠婚喪祭의 禮을 厚히할 것을 擧示하고 그 勵行을 勸獎하였으므로 王侯士族은 물론이요 一般民庶에 이르기까지도이것을 模倣하게 되었다. 65)

또 孝道와 貞烈은 最高의 道德的 指標로 되어 있어서 孝子, 貞婦에 대하여서는 社會的으로 크게 讚揚이 있을 뿐 아니라 國家的으로도 恪別한 惠賜가 있었다. 66 李太祖에 의하여 만들어진 「大明律直解」에 七日不孝라 하여 「十思」中의 하나로 不孝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67 世宗大王은 三綱行實圖를 인쇄하여 一般에게 流布하여 忠孝를 권장하였다. 68)

家長에 관해서는 이 時期에 뚜렷하게 法的 地位가 形成되지는 않았다.

우선 經國大典 成立期까지만 하더라도 家族關係를 融欠母·孫子女,父母·子女,夫·妻關係로 把握할 뿐 家長·家屬關係로 把握하지 않았다. <sup>69)</sup> 그 후에 우리 나라에서 家長이 法的 制度로서의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家族의 크기는 小數人化의 直系化하는 특색을 지닌 규모로 형성되었다. <sup>70)</sup>

아뭏든 李朝初期의 社會는 農業社會였고 老人의 家族的 社會的 地位는 높은 狀況에서 老人 은 優待를 받았다.

## 4.2. 太 祖 (1932-1938)

太祖의 老人에 관한 政策은 그의 建國初 教旨(원년 7월 28일(정미))中에 나타나고 있다. 71) "……1. 忠臣,孝子,義夫,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할 것이다. 所在官司로 하여 금 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門間를 세워 旌表하게 할 것이다. 1. 鰥寡孤獨은 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教恤해야 될 것이다. 所在官 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賑恤하고 賦役을 면세해 줄 것이다. ……".

<sup>65)</sup> 李相佰, 前揚書, p. 324;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9), pp. 399-413.

<sup>66)</sup> 李相佰, 前揭書, p. 325.

<sup>67)</sup> 法制處, 大明律直解 (서울:法制處, 1964), p. 51.

<sup>68)</sup> 車文學, "孝行点考", 州中 号研究所, 忠孝思想 (付 号:檀國大學校出版部, 1977), p. 256.

<sup>69)</sup> 朴秉豪, "韓國의 傳統家族斗 家長權", 一志社, 韓國學報·第二輯(1976, 봄), p. 70.

<sup>70)</sup>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서울: 一志社, 1977), p. 219.

<sup>71)</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강된대왕실록 1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2), p. 100.

이와같은 老人에 관한 政策에 따라 太祖 李成桂는 그의 在位 中에 老人을 恭敬하고 老人에 대한 여러 가지 施策과 制度를 실시하였는 데 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老人에 관한 施策을 살펴본다.

일반적인 施策으로서는 救恤對策을 實施하였다. 2년 4월 19일(계사)의 傳旨에서 靑고 쇠약하며 廢疾등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할 사람은 雜多한 徭役을 면제하고, 불쌍히 여겨 救恤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72) 이를 위한 具体的인 老人施策은 4년 7월 26일(정사)에 나타나고 있다.

각 도로 하여금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을 방문하여 奪卑 여하를 불문하고, 쌀 2곡(斛)씩 하사하게 하였다. 73) 한편 節婦老人, 高齡者, 孝子老人에게는 특별한 施策을 실시하여 쌀 10석씩을 주고 復戶하게 하였다. 74)

그리고 7년 12월 초 6일(무신)에는 여러 道의 남녀로서 나이 80세 이상이 된 사람에게는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묻지 않고 雜役을 면제하고 우대하여 矜恤하게 하였다. 75)

太祖는 王氏의 老人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3년 2월 27일(정유) 憲司에 명하여 王氏의 늙은이와 약한 者를 江華府에서 일일이 감시하여 아뢰게 하였다.76)

人材를 登用하는 데 있어서도 高麗王朝의 耆老를 발탁하였다." 그리고 諫官 李文化등이 老人除授을 反對하였다(4년 1월 25일(경신)). 그러나 太祖는 元본를 버릴 수 없다고 됐다. 76) 따라서 太祖는 老人除授施策을 一貫됐다고 볼 수 있다.

太祖의 人事行政面에서 老人에 대한 施策은 70세 이상의 老人에 관련된다. 즉 外方의 品官으로 나이 70 이상된 자는 還鄉하기를 허락하게 하였다. <sup>79)</sup> 또한 70세 이상되는 늙은이는 朝陽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였다. 즉 7년 9월 12일(갑신)의 教旨 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sup>80)</sup>

"……1. 70세 이상되는 늙은기는 正朝斗 誕日등 慶事에 관계되는 외에는 朝班을 따라 朝鶴 하는 것은 면하도록하여, 나의 노인을 공경하는 뜻에 副應하게 할 것이다.……".

<sup>72)</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楊書, p. 183.

<sup>73)</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강헌대왕실록 2 (서울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2), p. 72.

<sup>74)</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掲書, p. 95.

<sup>75)</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揭書, p. 311.

<sup>76)</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 강헌대왕실록 1, p. 248.

<sup>77)</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楊書, p. 259.

<sup>78)</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 강헌대왕실록 2, p. 47.

<sup>79)</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揭書, p. 188.

<sup>80)</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掲書, p. 298.

老人을 優待하기 위해서 賦役 等을 면제시키는 施策이 있었다. 2년 4월 19일(계사)의 傳旨에서 徭役을 면제시키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1)</sup> 그리고 7년 9월 21일(갑신)의 教旨에서 노쇠하여 느른한 사람에게 賦役을 면제하게 할 것과 奴婢중에서 나이 60세가 된 사람은 役에서 放死하게 하였다.<sup>82)</sup> 그리고 軍役을 면제시키고 있었다.<sup>83)</sup> 한편 70세 이상된 老人에게는 刑罰의 執行을 輕減시켜 주었다.<sup>81)</sup>

다음으로 太祖朝에 있어서 老人을 위한 制度的인 側面을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大明律直解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에 耆老所와 賑濟所에 관하여 論及한다.

太祖元年 7月의 即位教旨에서 正式으로 大明律을 依用한 것을 宣言하였다. 85) 李太祖의 이即位教旨를 具体的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大明律直解의 刊行事業이다. 太祖 4年에 "大明律"을 우리 나라의 吏讀文으로 逐條譯解하여 百余卷을 印刷, 中外에 頒布하여 그 遵行을 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大明律이 朝鮮王朝의 全期를 通하여 基本的인 刑事法의 役割을 하게 한契機를 만들었다. 86)

그런데 朝鮮王朝에서는 同一한 行爲일지라도, 그 行爲와 被害者의 身分關係의 如何에 따라서, 그에 대한 道德的인 評價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어떤 行爲에 대한 違法性與否 및 非難可能性의 大小 즉 刑罰의 範圍는 그러한 具体的인 身分關係에 따라서 決定된다.87)

본시 大明律에서도 敬老思想의 投影되고 있는데<sup>86)</sup> 大明律直解도 같다. 大明律直解에 [老小慶疾收贖]從를 비롯해서 老人을 위한 規定이 많다. 그리고 老人에 대한 犯罪일수록 그에 대한 刑罰이 嚴格하다.<sup>83)</sup> 이와 같은 制度가 太祖朝에서 確立되었다. 그런데 太祖朝에서 이루어진 非傳의 經濟大典에서는 老人에 관한 여러가지 制度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具体的 內容을 알 수 없다.

耆老所는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다. 태조 3년에 임금이 나이가 60을 넘자 耆祉에 들어갔고, 문신・재신으로 정2품 實職에 있으면서 나이 70 이상은 사람을 가리도록 명하여 비로소 입사하는 것을 허락했고, 蔭官・무관은 참여하지 못한다. 서로 모이는 곳이

<sup>81)</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 강헌대왕실록 1, p. 183.

<sup>82)</sup> 세종귀왕 기념사업회, 태조 강헌대왕실록 2, pp. 296-298.

<sup>83)</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掲書, p.144.

<sup>84)</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楊書, p.181,

<sup>85)</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揭書, p.101.

<sup>85)</sup> 徐豪敦, 朝鮮王朝刊事制度의 研究(서울:博英社, 1974), p. 23.

<sup>87)</sup> 徐壹教, 前揭書, p. 98.

<sup>88)</sup> 桑原隲蔵, 中國の 孝道(東京:講談社, 1977), p.74.

<sup>89)</sup> 法制處, 大明律道解(付金:法制處, 1964)香州村 [殿祖父母・父母], [麗祖父母・父母]條 参照。

되었다. 90)

또한 脹濟所를 太祖 4년에 설치하여 老病으로 주리고 빈곤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자를 救恤 케 하였다.<sup>91)</sup>

이와 같이 李太祖는 國教를 儒教로 삼으면서 그 實踐面에서 忠孝를 강조하였으며 나아가서 敬老施策과 制度의 創設을 通해서 老人福祉向上에 이바지했다. 즉 制度面에서 발전상을 몇 불 수 있다.

## 4.3. 定 宗 (1399-1400)

太祖의 뒤를 이어 即位한 定宗도 太祖의 敬老思想을 繼承하였다. 그러나 在位期間이 짧아서 많은 施策을 實踐하지 못한 것은 當然하다. 老人福祉向上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等은 太祖의 그것을 土台로 해서 王政을 폈을 것이다.

定宗 역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老人의 脹恤에 힘썼다. 92) 한편 孝悌를 强調했다. 93)

老人을 위한 制度는 太祖의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보아지거니와 致仕制度에 관해서는 定宗朝에 와서 論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년 5월초 1일(경오)에 門下府에서 上疏하여 時務를 진술하는 중에,

"……이제부터 대소 臣僚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자는 致仕하도록 허락하여 私第로 나가게 하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定宗은 윤허하지 않았다. 또 2년 4월초 6일(신축)에 門下府의 上疏중에,

"……나이 늙은 勲舊로서 授職할 수 없는 70세 이상의 사람은,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그대로 致仕하게 해서 녹을 허비하지 않게 하며,…"

라는 內容에 대해서 역시 定宗은 不應하였다. 따라서 定宗朝게서는 70세의 致仕制度는 실행되지 안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70세의 致仕制度에 대한 論議는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본다.

<sup>90)</sup>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동국여지승람 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1), p. 228,; 韓國古典國澤委員會, 國澤 大典會通(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60), p. 35,; 민족문화추진회, 연려실기술 별집 제6권(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pp. 440-441.

<sup>91)</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조강헌대왕실록 2, pp.72-73.

<sup>92)</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정종광정대왕실록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p.164.

<sup>93)</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前渴書, p.190.

## 4.4. 太 宗 (1401-1417)

定宗의 뒤를 이어 即位한 太宗은 孝思想에 대해서 투철한 所信을 갓지고 있었다. 949 임금이 말하기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따라서 孝에 바탕을 둔 敬老思想도 太宗에서 찾아 볼 수 있다. 95)

太宗朝에서 나타난 老人에 관한 施策과 制度等을 고찰하는 데 먼저 施策에 관하여 살펴본다.

太宗朝의 老人에 관한 施策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발달하여 나타난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한 老人福祉施策은 아니라고 보지만 前代에 비하면 매우 多樣한 施策이 이뤄지고 있다.

먼저 老人에 대한 教恤事業을 살펴 보기로 한다. 5년 3월 20일(을묘)에 나이 80세의 노인파 鰥寡孤獨을 모두 教恤하도록 명하였다. 96 또 14년 5월초 7일(기묘)에 老人量 腰恤하였는데 1백1세의 2인에게는 쌀·콩 각각 7석씩을, 90세 이상의 7인에게는 쌀·콩 각각 5석씩을, 80세 이 상에게는 쌀·콩 각각 3석씩을 진휼하였다. 97 이와 비슷한 진휼은 同年 6月에도 실시되었다. 98 또한 乞食하는 老人에게 쌀 2석을 준 예도 있다. 99)

老人에 대한 人事行政上의 施策으로는 前朝와 비슷한 施策이 나타나고 있다. 4년 2월 16일(정해)에 관리를 낡은 어미가 있는 곳(瑞興)으로 옮겨주고 있다. 100) 이와 같은 事例는 12년 5월 11일, 12년 1월 28일, 17년 12월 15일, 18년 5월 23일 등에 나타나고 있다. 14년 3월 14일 (정해)에는 勤親給暇의 법을 세웠다. 101) 16년 9월 16일(갑진)부터는 제주목사・判官과 縣監을 노친이 있는 자는 差任하지 못하도록 했다. 101 그리고 不孝때문에 官職이 罷免되었다 103 또한 老人을 優待하여 朝啓를 면제시키고 있음은 前朝와 같다. 104)

일정한 老人에게 田地의 並作을 허용하였다. 100)

<sup>94)</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태종광정대왕실특 1 (서울:광명인쇄공사, 1974), p. 269.

<sup>95)</sup> 세종대왕 기념사업희, 태종공정대왕실록 7, p. 354.

<sup>96)</sup> 태종공정대왕실록 2, p. 146.

<sup>97)</sup> 태종공정대왕실록 6, p.180.

<sup>98)</sup> 前掲書, p. 206.

<sup>99)</sup> 前掲書。p. 135。p. 195.

<sup>100)</sup> 대종공정대왕실록 2, p.10.

<sup>101)</sup> 태종공정대왕실록 6. pp.149-150.

<sup>102)</sup> 태종공정대왕실록 7, p. 258.

<sup>103)</sup> 태종공정대왕실록 3, p. 342.

<sup>104)</sup> 태종공정대왕실록 7, p. 223.

<sup>105)</sup> 태종공정대왕실록 2, p. 387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田地의 並作名 鰥寡孤獨으로 子惠이 없고, 奴婢가 없는 자로서 3·4結 이하를 경작하는 자 이외는 일체 금단하고….

老人에게는 賦役을 代役케 하였으며<sup>106)</sup> 60세 이상된 老人의 軍役을 代役케 하였다.<sup>107)</sup> 工匠으로 나이 70이 된 자의 사역을 면제시키고 있다.<sup>108)</sup> 老人에게 楮貨의 부담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sup>109)</sup>

부담을 면제 또는 代役시키는 데 興味로운 현상은 66세를 分界点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奴婢는 66세 이상이면 役事를 不許하고 있다. 110 下典으로서 나이가 66세 이상인 자는 身役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1111 또한 受田한 각 品官으로서 나이 66세 이상되는 자는 아들이나 사위로 하여금 대신하여 侍衛하는 것을 許諾하고 있다. 112)

太宗은 太祖가 만들어 놓은 老人에 관한 制度를 尊重하면서 進一步하여 여러가지 制度를 만들었다.

4년 7월 20일(기축) 司諫院에서 上疏하여 京中과 여러 郡에 養民院을 設置할 것을 아뢰니太宗이 允許하였다. 113 이 養民院은 백성 가운데 늙어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거나, 어려서 아비가 없는 무리와, 옆에 의지하여 살아 갈만한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기관이다.

定宗朝에서 論議되기 시작했던 致仕制度가 太宗朝에서 確立하게 되었다. 16년 5월에 70세에 致仕하는 法이 만들어졌다. 1149 이 致仕制度는 오늘날의 停年制度와 같은 것으로서 老人輻祉向上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老人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太宗은 檢校의 녹을 받는 자들을 革罷하여 나이 70세에 이르고 공이 있는 자에게 致仕를 주고 녹을 받게 하였다. 115) 한편 70세 이상의 耆老로서 致仕하여 녹을 주는 것을 제외하였다. 116) 그리고 70세 이상의 個人에게 度牒을 주지 않았다. 117) 이것은 70세의 致仕制度量 個人에게 擴大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太宗朝에 이르러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는 多樣化되고 具体化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sup>106)</sup> 前揭書, p. 228.

<sup>107)</sup> 태종공정대왕실특 3, p. 36.

<sup>108)</sup> 태종공정대왕실특 4, p. 240.

<sup>109)</sup> 대종공정대왕실특 7, p.11.

<sup>110)</sup> 태종공정대왕실록 5, p. 269.

<sup>111)</sup> 대종공정대왕실록 6, p. 205.

<sup>112)</sup> 前搗書, pp. 349-350.

<sup>113)</sup> 태종공정대왕실록 2, p. 70.

<sup>114)</sup> 태종공정대왕실특 7, p.194.

<sup>115)</sup> 前掲書, p. 214.

<sup>116)</sup> 前揭書, 219.

<sup>117)</sup> 前揭書, p. 245,

# 4.5. 世宗大王(1418-1450)

太宗의 뒤를 이어 即位한 世宗大王은 한글創制等 韓民族史에 찬연히 빛나는 文化中興을 일으킨 임금이다. 그런데 世宗大王은 忠孝思想과 敬老思想에 대해서도 투철한 慧眼을 가지고 있었다. 世宗大王은 即位하자마자 罪를 赦免하는 教旨에서 不忠, 不孝는 大罪也라고 宣布하였다. 世宗大王은 即位하자마자 罪를 赦免하는 教旨에서 不忠, 不孝는 大罪也라고 宣布하였다. 한편 孝子, 節婦, 義夫, 順孫의 特行있는 자를 널리 구하였다. 이미 4.1.에서 밝힌바와 같이 世宗 13年에 三綱行實圖를 편찬하여 世宗 16年에는 그것을 印刷하여 一般人에게 流布했다. 즉 일반인에게 忠孝思想을 鼓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世宗大王은 守令의 職責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수령의 직책이란 그 大要가 農桑을 권장하고 독려하며, 徭役과 賦稅를 가볍게 하며, 늙은이를 잘 기르는데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119) 여기서 世宗大王의 敬老思想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老大臣들이 拜謁하는 데 그 대로 玉座에 앉아 있을 수 없다 하여 서서 인사를 받았다. 120) 世宗大王은 이 정도로 老人을 優待하였다. 이렇게 老人을 위하는 世宗大王의 老人施策과 그 制度에 관하여 고찰해 본다.

먼저 老人을 위한 施策에 관하여 살펴 본다.

世宗朝에 접어 들면서 特異한 것은 百歲 以上의 高齢者에 대한 優待를 들 수 있다.

- 高陽縣에 나이 백5세나 된 노인이 있으므로, 임금께서 襦衣와 手冠과 **쌀 3**석을 내려주다. <sup>121</sup>)
  - 사람을 德水院에 있는 백세노인에게 보내어, 쌀 석섬과 옷 한 벌을 주다. 122)

世宗朝에서 養老事業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리하여 養老條件도 具体的으로 마련되었다. 123) 여러 사람의 의론이 "나이 70세 이상으로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이 타인의 집에 붙어먹는 자는. 서울의 5部와 외방의 자 고을에서 상세히 조사 고찰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 상급관청에 傳報하여.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여 飢寒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식량을 國庫의 쌀과 소금, 장을 아울러서 반년동안 먹을 것을 지급하고, 옷은 매년 布 2필을 지급하며, 자 고올에서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魚肉과 菜果등으로 적당히 지급하여 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서울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감사가 엄중히 규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

또한 養老條件이 70세 이상 老人과 80세 이상 老人이 다소 달라지는 수가 있다. 124)

<sup>118)</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 p.19.

<sup>119)</sup> 세종장헌대왕실록 5. p. 292.

<sup>120)</sup> 세종장헌대왕실록 9, p. 33.

<sup>121)</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 p.124.

<sup>122)</sup> 前掲書, p. 252.

<sup>123)</sup> 세종장헌대왕실록 5, p. 279.

<sup>124)</sup> 세종장헌대왕실록 4, p. 242, : 세종장헌대왕실록 16, p. 372.

老人을 위해서는 부역을 면제했는 데 나이가 90세 이상된 자에게는 그 집의 과세와 부역을 면제했다. 125 그리고 나이 만 70이 되어 致仕한 堂上官 이상으로서 田里에 물리가서 사는 자는 그 집의 부역을 면제케 하였다. 126)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 밖에 없는 자에게는 시중들 奴僕을 주는 施策이 있었다. <sup>127)</sup>

人事行政上 老人을 위한 施策으로서는 前朝와 같이, 老父母扶養을 위해서 同居할 수 있게 하는 施策이 실시되었다. 128) 그런데 특히 人材를 登用하는 데 孝順한 사람을 널리 구하였다. 129)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老人을 위한 制度는 현저히 발전했다. 8년 7월 17일에는 世宗大王이 벌써 오는날의 養老院에 관한 發想을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養老法의 立法을 下命하였다. 130) 그리하여 養老宴이 하나의 制度로 정착하게 된다. 養老宴게 참석하는 老人은 83세 이

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131) 본시 養老宴은 士大夫로서 年老者가 참예하게 되는데 世宗大王 은 이를 反對하여 庶民의 男女老人도 참예해야 한다고 주강하였다. 132) 즉 世宗大王은 養老에

男女 區別이 있을 수 없으며 養老에는 貴賤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여 실천하였으니 世宗大王의 敬老思想은 至高至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조정관원의 아내 외에 보통사람의 아내는 長衫을 제하고 짧고 편한 의복을 입고서도 養老宴게 참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3) 뿐만 아니라 世宗大王은 양로연에 늙은 부인들이 오래 앉가있기 곤란한 것을 염려하여 예절을 닦은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傳旨하였다. 134) 이처럼 世宗大王은 老人의 사소한 고충까지염리했던 것이다. 養老宴을 오래 실시한 경험으로 미루어 世宗大王은 22년 8월 11일에 양로연을 制度化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135)

그러나 심한 가뭄때는 養老宴이 일시 中斷된 때도 있었다. 136)

刑事制度는 太祖의 大明律直解를 繼承하였으므로 老人에게 有利하도로 刑기 執行되었다. 1370

<sup>125)</sup> 세종장헌대왕실록 2, p.48.

<sup>126)</sup> 세종강헌대왕실록 18, p. 338.

<sup>127)</sup> 세종장현대왕실록 2, p. 48.

<sup>128)</sup> 세종장취대왕실록 5, p. 290°

<sup>129)</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 p. 252.

<sup>130)</sup> 세종장헌대왕실록 5, p. 227.

<sup>131)</sup> 세종장헌대왕실록 8, p. 339-342.

<sup>132)</sup> 세종장헌대왕실록 9, pp. 42-43, p. 45.

<sup>133)</sup> 前锡書, p. 408.

<sup>134)</sup> 前摄書, p. 412

<sup>153)</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4, p. 272.

<sup>136)</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6, p. 162, : 세종대왕실록 17, p. 31, p. 246.

<sup>137)</sup> 세종강헌대왕실록 5, p. 348, ; 세종강된대왕실록 7, p. 71.

耆老所制度는 그대로 傳承되었으나 다만 名稱만 致仕耆老所로 변경하였다. 136) 太宗朝에서 定立된 致仕制度는 世宗朝에 와서 彈力性과 伸縮性을 띠게 되었다.

25년 1월초 5일 ○ 의정부에서 이조의 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70세에 시작하는 법은 이미 그 전에 受教한 바이오나, 크고 작은 관원들이 나이 만 70이 되기만 하면 곧 사표를 내게 함은 실로 옳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나이 70에 이르러서 관례상 사직하게 된 이는 이조에서 살펴보아 가지고 아뢰어서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다. 139)

世宗朝에서 老人職을 만들어 1백세 이상이면 남자는 7품으로 제수하고 여자도 또한 작위를 봉하도록 했다. 140) 이후 老人職은 90세 이상에게 제수하는 것으로 변천하였으며141) 나아가서 影職(虛職)을 세웠다. 142)

이와 같이 世宗大王의 투철한 敬老思想은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面에 投影되어 敬老施策과 敬老制度를 浮刻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施策面에 있어서는 具体化되는 현상이 있으며制度面에서는 多面化되는 성향이 있다고 보며 世宗大王은 좋고 바람직스런 施策은 制度化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老人福祉向上을 위한 施策과 制度는 太宗朝에서움트기 시작한 것인데 世宗朝에 이르러 開花滿發하여 結實을 봤다고 생각한다. 특히 養老宴에 관한 世宗大王의 자상한 配慮는 그의 敬老思想 중의 白眉라 아니할 수 없다.

## 4.6. 文 宗 (1450-1452)

世宗大王의 偉業을 이어 即位한 文宗은 짧은 在位期間이었지만 그 偉業을 繼承하여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였다. 特히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面에서 努力한 足蹟이 영보인다.

우선 施策面에서 본다면, 世宗大王이 特히 100세 이상 노인을 優待했던 施策을 이어 받아 실시하고 있다.

#### **즉**위년 6월 9일(신사)

○ 全羅道監司가 아뢰기를,

"同福縣 사람 檢禮賓卿 白元鳳의 아내 尹氏가 나이 1백 2세이니, 일짜기 내린 教旨에 의하여 그 집을 온전히 보살펴 주고 10일마다 饌具를 주고 해마다 쌀 10석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sup>138)</sup> 세종장헌대왕실록 6, p.144.

<sup>139)</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6, pp. 7-8.

<sup>140)</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6, p. 99.

<sup>141)</sup> 前揭書, p. 437.

<sup>142)</sup> 세종장헌대왕실록 17, p. 206.

따랐는데. 이것은 하나의 例이다. 143)

老人을 위한 人事行政上의 施策이 文宗朝에서 제법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登第吴한 老人을 除授하는 施策이 있었다.

"예조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館게 居타고 늙도록 登第하시 못한 者 1·2년을 골라서 職位 를 제수하게 하라."<sup>7149</sup>)

老親을 奉養하지 않았기 때문에 官吏가 罷免되기도 했다. 145) 그리고 常參하는 관원으로 70세가 된 사람을 쓰지 안했다. 145) 즉 常參하는 職責은 노인을 피로하게 만들게 되므로 이러한 施策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前朝에서 老大臣이 朝謁, 朝啓하는 것을 省略하는 施策과 그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忠臣과 孝子의 자손은 敍用되었었는 데, 烈女의 자손이 敍用이 안되었던 것을, 敍用의 길을 烈女의 자손에게까지 擴大하였다. 145) 이와 같이 老人을 위한 人事行政上의 시책은 前朝의 施策을 補完하면서 발전하였다.

世宗朝에서 胎動하기 시작한 老人加資는 文宗朝에 와서 具体化된다. 이것은 원년 1월 26일 (병신)의 下教에서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148)

文宗朝에 있어서 記錄上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致仕制度에 관한 것으로 문종실록에 15個所를 헤아릴 수 있는 致仕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이만큼 文宗朝에서는 致仕制度에 관한 관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世宗朝에서 致仕制度는 仰縮性과 彈力性을 보이기 시작했다 함은 이미 살펴 본 바이거니와 文宗朝에서도 致仕制度는 그와 같은 성질을 띠면서 발달하였다. 영의정 河濱은 80세가 되도록

者본의 남자와 부인가운데 食家에서 80세 이상으로 白身(벼슬이 없는 일반백성)이면 종8품에 除技하고, 元敬이 9품인자는 정8품게 제수하고, 원직이 8품인자는 정7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7품이상인자는 1자급을 뛰어넘어 제수하고, 90세이상으로 백신이면 정8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자는 종7품에 제수하고, 원직이 8품이상인자는 2급을 뛰어 넘어 제수하고, 1백세이상으로서白身 및 원직이 중7품이하인자는 정6품을 제수하고, 1원직이 7품이상인자는 3자급을 뛰어넘어제수하의 아울려 3품게 한하기그치라. 부인들기 封荐로 이게 准하라. 餞디는 나기가 80세이상의 白身은 정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자는 종3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8품이상인자는 1자급을 올리고, 90세이상의 白身은 종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자는 정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자는 중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기상인자는 3차급을 뛰어넘어제수하라. 1백세이상의 白身과 8품기하인자는 종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기상인자는 2자급을 뛰어넘어제수하라 5품게한가 그치라. 그 80세이상인남자와부신은 아울려 免賤하게하고, 여자도 또한위와같이 封訴하라,

<sup>143)</sup> 문종실록 1, p.134.

<sup>144)</sup> 문종일록 2, p.54.

<sup>145)</sup> 前掲書, p.134.

<sup>146)</sup> 문종실록 3, p. 434.

<sup>147)</sup> 문종실록 2, p.307.

<sup>148)</sup> 前渴書, pp. 269-270세서 다음과 같은 下数가 있었다.

任職하였다. <sup>145</sup>) 그런 빈면 70세에 罷職되는 경우<sup>150)</sup>와 70세가 되어 사직하기를 自願하여도 不許하는 事例가 있다. <sup>151)</sup> 그래서 실제로는 70세 이상이 되어도 致仕하지 아니한 사람이 많않다. <sup>152)</sup>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은 致仕하지 아니한 사람을 좋게 보지 안했던 것 같다.

원년 10월 29일(갑오)

#### ○ 藝文館直提學 崔德之

나이가 68세였는 데 스스로 致仕하니 세상에서는 나이를 무릅쓰고 억지로 조정에 서는 자가 많은데, 최덕지는 아직 致仕할 나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스스로 물러가니, 당시의 의논이 그를 칭찬하였다. 153)

致仕하는 70세라는 年齡은 부르는 年齡이 아니라 실제 나이로 決定된 事例가 있다. 1549이로 써 보면 오늘날의 停平制에 의한 年齡計算法과는 다르다 하겠다. 그리고 致仕한 堂上官은 110세노인을 優待하는 것과 같게 體遇하고 있다. 155)

致仕制度와 관련된 일로서 武臣을 쓰는 데는 60세 이전이라야 한다는 金宗瑞의 주장이 있었다. 156) 그런데 宦官에 관해서는 致仕制度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157) 하여 文宗朝에서 致仕制度가 具体的으로 確立한 것은 2년 2월 7일(신미)字의 證政府 上疏에서였다. 158) 이 上疏에서 致仕制度의 骨格이 定立되었는 데 그 骨字는 ① 70세가 되어 관례에 따라 마땅히 致仕해야 할사람은 스스로 辭死하도록 허락하고 ② 그들 중에서 명망이 평소부터 드높아서 職事를 맡길만한 사람은 特命으로 就職하도록 하며 ③ 致仕制度에 의하여 辭退하는 날을 당해서는 3품 이하에게는 임금의 允許를 얻어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文宗朝에 있어서 致仕制度의 발달은 特記할만 한 것이라 하겠다.

# 4.7. 端 宗 (1452-1454)

文宗의 뒤를 이어 即位한 端宗은 어린 나이로 在位期間이 짧아 經綸을 펴지 못했다. 그러니

<sup>149)</sup> 문종실록 2, p.83.

<sup>150)</sup> 문종실록 1, p.176, : 문종실록 2, p.397.

<sup>151)</sup> 문종실록 2, p. 215,; 문종실록 3, p. 285.

<sup>152)</sup> 前揭書, p. 250.

<sup>153)</sup> 문종실록 3, p. 245.

<sup>154)</sup> 문종실록 2, p.176.

<sup>155)</sup> 문종실록 1, p. 219.

<sup>156)</sup> 前揭書, p. 88.

<sup>157)</sup> 前掲書, p. 92.

<sup>158)</sup> 문종실록 3, pp. 300-302.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는 先王의 偉業을 繼承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枝葉的으로 발전시킨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老人을 위한 施策의 一環策으로 養老事業을 전개했다. 159) 100세 이상 노인에 관한 惠養도 전개하였다. 160) 人事行政上 孝子等을 擢用하는 施策을 쓰기도 했다. 161) 그리고 70세 이상된 자에는 모두 散官의 職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모두 前職으로써 職街을 띠게 하였다. 162)

大夫가 年老하여 致仕하고 시골로 돌아간 자는 所在地의 수령으로 하여금 달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고 매양 四孟月에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163) 이러한 대우를 致仕하여 서울에 있는 老人에게도 확대하였다. 164) 그리고 이러한 대우는 致仕한 堂上官의 妻로서 나이 70이된 참와 堂上官의 妻로서 70이되어 寡婦로 지내는 자에게 확대 실시하였다. 165) 致仕한 老人을 위한 施策의 擴大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老人을 위한 제도로서 耆老所가 있는 데 그대로 **傳承되고** 있다. 다만 그 構造上 首領官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sup>166)</sup>

致仕制度의 운영은 罷職시키는 경우 보다 不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67)

老人加資의 일은 文宗朝의 그것을 그대로 傳承하고 있다. 168) 冤罪의 제도로서 남자 나이 80이고 寫疾이 있는 것과 여자 나이 60이고 廢疾이 있는 것은 아울러 緣坐를 면하게 한 事例가세번 나타나고 있다. 169)

한 마디로 端宗은 致仕한 자의 老後問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한 施策을 발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 V 結 論

이상에서 老人福祉向上을 위한 在來 우리나라의 老人保護에 관하여 주로 李朝初期의 前半部에 해당하는 太祖朝로 부터 端宗朝까지의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로 나누어 고찰해 봤다. 이

<sup>159)</sup> 단종실록 2, p.415.

<sup>160)</sup> 단종실록 1, p.87, p.92, p.109.

<sup>161)</sup> 단종실록 3, p.102.

<sup>162)</sup> 前掲書, p.157.

<sup>163)</sup> 단종실록 1, p. 29.

<sup>164)</sup> 단종실록 3, p. 39.

<sup>165)</sup> 前掲書, p. 59.

<sup>166)</sup> 단종실록 1, p. 340.

<sup>167)</sup> 단종실록 2, pp.110-111, p.319, : 단종실록 1, p.167.

<sup>168)</sup> 단종실록 1, pp. 204-205.

<sup>169)</sup> 단종실록 2, p.214, p.275, p.333.

를 위해서 三國時代의 高麗時代의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를 概括的으로 규찰하였거니와 三國時代는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가 融合(fusion)하여 싹트기 시작한 時代라 볼 수 있다. 즉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라는 小圓周가 重疊(overlapping)된 時代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高麗時代에 접어들면서 養老事業의 多樣化現象이 나타났으며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가 分化(differentiation)하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라는 두 개의 圓周가 완전히 分離된 것이 아니라 大部分의 圓周는 포개지고 있으며 部分的으로 分離된 現象이라 할 수 있다.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가 本格的으로 發達하기 시작한 것은 李朝初期라는 것을 고찰했다. 李太祖는 建國하자 儒教를 指導原理로 삼으면서 忠孝를 강조했다. 이것은 그의 即位教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李太祖는 老人을 위한 여러가시 施策을 실시했으며 制度面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創設하였다. 耆老所와 脹濟所의 설치가 그것이다. 李太祖朝에 접어들면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는 빨리 分化하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으며 施策과 制度의 圓周를 넓혀 갔다. 이러한 養老事業들은 定宗朝에 이어졌으며 定宗朝에서는 高麗時代에형성되기 시작했던 致仕制度에 관한 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定宗朝에서는 太祖朝에서 微大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의 圓周를 넓히지는 못하였다. 다만 制度라는 圓周內에서 致仕制度를 發芽시켰던 것이다. 이 致仕制度가 定立된 것은 太宗朝에서 였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하여 太宗朝에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는 多樣化되고 具体化되는 조집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이 때에는 李太祖朝에서 넓혀 놓은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의 圓周 가 다시 再擴大하려는 胎動을 한 것이다.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가 確固한 기를이 마련된 것은 世宗朝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즉太宗朝에서 胎動하기 시작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의 圓周가 크게 擴張하면서 새로운 大團圓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施策의 制度化라는 現象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世宗大王은 老人을 위하는 일에 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敬老思想은 투철했다. 世宗大王의 養老宴에 관한 자상한 관심이야 말로 그의 敬老思想의 極致라 하겠다. 그리고 당시 養老院과 養老法에 관한 發想과 그것의 실천은 놀라우리만큼 發達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일은 세종 8년 (1420) 7월 17일에 있었으니 지금으로 부터 558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確立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가 文宗朝와 端宗朝로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補完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文宗朝에서는 致仕制度가 補完되었으며 老人加資制度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端宗朝에서는 致仕한 老人을 위한 施策이 補完되었다. 文宗朝와 端宗朝에서는 世宗朝에서 接大된 老人을 위한 施策과 制度의 圓周는 그대로 維持繼承되면서 그들의 內實化 現象이 나타났다고 본다.

한 마디로 말해서 三國時代 以來 朝鮮王朝의 世宗朝에 이르러서 老人福祉 向上을 위한 施策과 制度는 換骨奪胎의 발달을 하였으며 그 絕頂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절정을 이루었던 原因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그것은 오직 世宗大王의 투道한 敬老思想에 基因한다고 본다. 이것이 本 硏究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 것이다.

三國時代 以來 高麗時代를 지나 李朝初期에 접어들면서 老人中 保護를 받았던 老人은 주로高齢者, 耆老所의 老人, 致仕 後의 老人 그리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老人들이었다.

在來의 우리 나라의 老人保護는 主로 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졌는 데 이는 歐美의 養老給與나 老人保險制度와는 그 배경이 基本理念上으로는 根本的으로 相異하다. 즉 우리 나라 古來로 내려 오는 家族制度와 敬老思想에 기인한 美風 속에서 老人을 위한 施策이나 制度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老人을 위한 시책이나 제도도 그와 같은 美風에 바탕을 두고 이뤄졌다고 본다.

그러나 제아무리 훌륭한 다른 나라의 老人福祉에 관한 施策이나 制度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實情에 맞지 않으면 無用之物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老人問題의 性格은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 즉 西歐的 性格과 우리 固有의 性格인 것이다. [70] 따라서 本 研究가 우리나라 老人福祉問題의 실마리를 풀어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期待한다.

<sup>170) 1978</sup>년 12월 16일 韓國老人問題研究所에서 열린 韓國老年學會 創立總會에서 朴寬洙 會長의 閉會 辞에서.

#### — Summary —

# Welfare for the Aged during the Early Yi-Dynasty

Hann Chang-young

The problem of old people has recently raised its head even in my country, so that many gerontologists at home have payed chief attention to that problem. Their attention has been called to the fact that old people's lifetime is prolonged,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increases, the up-to-date situation of old people's life is not satisfactory and so forth.

However, nowadays the thought of respect for old people has been enhanced so that the boom of sight-seeing for old people has prevailed and the movement of law-making for the Old People Welfare Act has been enforc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find out the adequate model of the welfare for old people in my country. For this purpose we must study 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welfare for old people in my country. This study is one part of such a historical approach, using two concepts (measure and institution for old reople) in analys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Resu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 1.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guryo, Paekche and Silla)
- In this period the measure and institution was fused and the institution of retirement at the age of 70 raised its head.
- 2. Period of Koryo Dynasty

In this period the measure and institution for old people began to differentiate portially.

3. Beginning Period of Yi-Dynasty

The Yi-Dynasty rejected Buddhism and adopted confucianism so that the thought of loyalty and filial picty and that of respect for old people were emphasized.

In this period the measure and institution for old people entirely differentiated and each one conspicuously developed.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e and institution for old people reached its peak in the period of Great King Sejong, because he was kindest to old people. And there was a tendenc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sure for old people in that period.